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64
----------	------

2017년 4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4월 7일, 김진영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4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영 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교통안전 관련 부속시설물인 교통섬의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교통섬에 대한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해당 시설의 관리자를 자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과 서울시 설공단의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 수행사무가 대행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

항 및 별표 1).

- (2)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의 총괄관리자를 ‘물순환안전국장’으로 신규 지정함(안 제4조제1항제5호)
- (3) ‘위탁’을 ‘위탁 또는 대행’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4항, 제47조).
- (4)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에 교통섬을 추가하고, 자치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도로 부속시설물인 교통섬의 관리자가 불명확하던 것을 실정에 부합하도록 자치구청장으로 지정하여 관리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외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서울시설공단의 수행사무가 대행으로 재분류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임.

[표] 주요 개정내용

연번	주요 개정내용	구분	적용 조항	비고
1	교통섬의 관리자를 자치구청장으로 지정	추가	안 [별표 1]	
2	“수탁” → “수탁 또는 대행”	변경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8조제2항 안 제47조	서울시설공단의 사무
3	“도시안전본부장” → “안전총괄본부장”	변경	안 제4조제1항, 안 [별표 1]	
4	물순환안전국장의 총괄관리자 지정	추가	안 제4조제1항제5호, 안 [별표 1]	

■ 교통섬 관리자 지정 건(안 [별표 1])

- 교통섬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 및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로서, 보도의 일부로 간주해 그동안 자치구가 관리해 왔으나,

- 2014년 7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통섬이 도로부속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 현행 조례상 시도(보도 제외) 관리주체인 도로사업소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리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시도 상에 위치한 교통섬을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로 분류하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관리방식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반영하여 자치구청장을 관리자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 도로사업소의 경우 전체 991개에 달하는 교통섬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로 시행하기엔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교통섬이 보도와 연계되어 있어 현행과 같이 자치구가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짐.
- 다만, 「도로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현실을 반영한 조례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 한편, 교통섬 유지관리 예산의 경우 지금까지 교통섬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자치구에 지원한 사례는 없으며 다만, 교통섬 방호울타리 유지관리 예산에 한하여 안전총괄본부가 별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자치구는 방호울타리를 제외한 교통섬 유지관리비를 서울시 안전총괄본부가 지원하는 보도 관리예산 내에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는 합리적 예산 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

시는 교통섬 유지관리 예산을 별도 책정하여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물 관리 위탁에 대행을 추가하는 건(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제47조)

- 현행 조례에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탁 또는 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지하도상가, 공동구 등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사무가 ‘위탁’인지 ‘대행’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¹⁾ 끝에,
- 2016.6월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 2016.6.30.)을 서울시가 발표하며 공단의 23개 사무 전체를 대행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기타(안 제4조제1항제3호, 제3장)

-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기후환경본부장이 총괄관리자로 되어 있는 ‘도로(차도·보도)의 청소’에 ‘낙하물 포함’이라는 단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1) 서울시 지하도상가 계약 관련해 공단의 사무가 위탁 또는 대행인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가 정하고 있는 위탁기간 3년 적용 대상 여부 논란(의안번호 제563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참조, 2015.9.8.) 등

- 이는 ‘도로의 청소’가 현행 조례〔별표 1〕에 자치구청장을 관리자로 하면서 낙하물을 포함하도록 이미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추가사항은 아니고, 단순히〔별표 1〕과 조례 본문을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그 외, 2013.8.1.일 동 조례 개정 당시 제17조 앞에 “제3장 공동구”가 착오 누락되어 이를 추가 정비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안전총괄본부장”으로, 같은 호 중 “도로부속물”을 “도로부속물,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를 “청소(낙하물 포함)”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순환안전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제4조제2항 전단 중 “받은”을 “받거나 대행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탁할”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탁자는”을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관리자는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을 “하천복개구조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공동구”를 삽입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위탁한”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킨”으로 한다.

[별표 1]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안전총괄본부장
		○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 녹지 및 가로수	안전총괄본부장
		○ 도로시설물	안전총괄본부장
도로 부속 물	공동구	○ 공동구	안전총괄본부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안전총괄본부장
		○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의 가로등 ○ 서울특별시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 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안전총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 관리 시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도로표지		○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설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안전총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안전총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안전총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한강사업본부장
		○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하천 시설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하수 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구조물			또는 자치구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p>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p> <p>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안전총괄본부장</p> <p>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p> <p>라. <삭 제></p> <p>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p> <p>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u>도시 안전본부장</u>,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p> <p>1. <u>도시안전본부장</u> :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u>도로부속물</u></p> <p>2. (생략)</p> <p>3. 기후환경본부장 : 도로(차도·보도)의 <u>청소</u></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p> <p>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생략)</p> <p>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p>	<p>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 <u>안전총괄본부장</u>-----</p> <p>-----</p> <p>-----</p> <p>-----</p> <p>1. <u>안전총괄본부장</u> -----</p> <p>-----</p> <p>-----</p> <p>----- <u>도로부속물,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u></p> <p>2. (현행과 같음)</p> <p>3. -----</p> <p>----- <u>청소(낙하물 포함)</u></p> <p>4. (현행과 같음)</p> <p>5. <u>물순환안전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u></p> <p>② -----</p> <p>-----</p> <p>----- <u>받거나 대행하는</u> -----</p> <p>-----</p> <p>-----</p> <p>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신 설〉

제18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관련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2. ~ 5. (생략)

③ (생략)

④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위탁
하거나 대행시킬 -----.

③ -----
-----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관리자는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
----- 하천복개구조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공동구

제18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수탁 또는
대행기관 -----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구관리
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유지관리기관의 공무원(수탁
기관 소속직원 포함)

2.·3. (생략)

⑤ ~ ⑦ (생략)

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
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
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수탁
또는 대행기관 -----

2.·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비용의 지원) -----
----- 위탁하거나 대
행시킨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 용 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 녹지 및 가로수	도시안전실장
		○ 도로시설물	도시안전실장
도 로 부 속 물	공동구	○ 공동구	도시안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 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 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안전총괄본부장
		○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 용 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 녹지 및 가로수	안전총괄본부장
○ 도로시설물		안전총괄본부장	
도 로 부 속 물	공동구	○ 공동구	안전총괄본부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안전총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 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 명시 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도로 옹벽·방음벽·맨홀 등)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 관 리 시 설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본부장
		○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도로 표지	○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 안 전 시 설	신호기· 안전표지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관 련	시선유도표지·시선 유도봉·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차량진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도로 옹벽·방음벽·맨홀 등)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안전총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 관 리 시 설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본부장
		○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도로 표지	○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안전총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 안 전 시 설	신호기· 안전표지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안전총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관 련	시선유도표지·시선 유도봉·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차량진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안전총괄본부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부속물	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등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자치구청장
하천 시설	<생 략>		
하수 도	<생 략>		
복개 구조물	<생 략>		
<p>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도시안전실장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도시안전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p>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부속물	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하천 시설	<원안과 같음>		
하수 도	<원안과 같음>		
복개 구조물	<원안과 같음>		
<p>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안전총괄본부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p>			